

IBS 연구단장 선정 및 연구단 구성 · 운영 FAQ

1. 연구단장 선정

1-1. 연구단장 신청 시 연령제한이 있나요?

A. 연령제한은 없으나, 연구단장은 장기간 왕성한 연구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.

1-2. 본원 연구단 연구단장의 정년은 어떻게 되나요?

A. 본원 연구단 단장은 영년직연구원(정년 65세)으로 채용되며, 일정 심사를 거쳐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. 단, 파견자의 경우는 원소속기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

1-3. 연구단장 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?

A. 연중 상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신청자가 2012년 제1회 연구단장 선정평가의 후보자 Pool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2012년 2월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.

1-4. 모든 신청자가 연구단장 후보자 Pool에 포함되나요?

A. 신청자의 연구계획이 IBS의 연구영역에 부합하지 않으면, 연구단장 후보자 Pool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연구단장 후보자 Pool에서 제외된 신청자에게는 사유를 첨부하여 통지할 예정입니다.

1-5. 연구단장 선정평가는 후보자 Pool에 포함된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나요?

A. 연구단장 선정평가는 후보자 Pool에서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에 한해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.

1-6. 연구단장 후보자 Pool에 포함되었으나,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자는 어떻게 되나요?

A. 연구단장 후보자 Pool은 2년간 관리되므로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 2년이 경과하면 재신청하여야 합니다. 단, 2년 이내에도 연구업적 추가 등의 신청서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.

1-7. 연구단장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?

A. 연구단장의 수월성과 연구계획의 우수성입니다.

1-8. 원소속기관이 있는 경우에도 본원의 연구단장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?

A. 본원 연구단장 신청은 이직이 원칙입니다. 단, 원소속기관장의 동의하에 본원으로의 장기간 파견이 가능하다면 원소속기관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본원 연구단장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1-9. 캠퍼스 연구단의 연구단장으로는 누가 신청 가능한가요?

A. 과학기술특화대학(KAIST, DGIST, UNIST, POSTECH, GIST) 교수는 소속 캠퍼스 연구단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, 대덕연구단지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는 KAIST연합캠퍼스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특화대학 이외 국공립·사립대학 교수와 대덕연구단지 이외 정부출연연구기관(예: KIST, 해양(연) 등) 연구자는 모든 캠퍼스에 지원 가능합니다.

1-10. 캠퍼스 연구단이 위치하는 기관의 소속자가 아닌 경우에도 캠퍼스 연구단 연구단장으로 신청 가능한가요?

A. 이직을 전제할 경우, 모든 연구자가 해당 캠퍼스 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원소속기관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해당 캠퍼스로 파견되는 경우에는, 원소속기관장과 해당 캠퍼스 기관장의 협의결과가 첨부되어야 합니다.

1-11. 외부 연구단의 연구단장으로는 누가 신청 가능한가요?

A. 모든 국공립·사립대학 교수와 출연(연) 연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과학기술특화대학 교수와 대덕연구단지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2. 연구단 구성 및 운영

2-1. 연구단장으로 선정되면 어떻게 임용되나요?

A. 연구단장의 임용형태는 연구단 유형별로 아래와 같습니다.

	연구단장 임용형태
본원 연구단	◦ IBS 영년직 연구원으로 임용 ◦ 원소속기관 정규직을 유지할 경우, IBS로 파견 필요
캠퍼스 연구단	◦ 원소속기관 정규직을 유지하되 IBS로 파견
외부 연구단	◦ 원소속기관 정규직을 유지

2-2. 연구단장의 연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?

A. 본원과 캠퍼스 연구단장의 연봉은 원장과의 계약으로 결정되고, 외부 연구단 단장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

2-3. 연구단장은 연구단 인력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?

A. 연구단장이 구성하되, IBS 혹은 연계기관*의 임용절차에 따라 임용합니다.

* 연계기관이란 캠퍼스 또는 외부연구단이 설치되거나, 그 소속 인력이 연구단에 파견·겸임 등을 통해 근무하는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말함

2-4. 연구단의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?

A. 연구단은 연구단장 1명과 그룹리더, 그룹의 연구원 및 Post-doc, 석·박사 과정생 등으로 구성됩니다.

2-5. 그룹리더가 캠퍼스 연구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IBS로 파견되어야 합니까?

A. 네. 캠퍼스 연구단은 IBS 소속조직이므로, 원소속기관은 파견을 통해 그룹리더를 IBS 소속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.

2-6. 연구단장과 그룹리더는 전임(full-time) 근무가 원칙인가요?

A. 네. 다만, 상세한 근무조건*은 원장과의 협상을 통해 확정합니다.

* (예) 교수의 경우 1년에 한 과목 이내 강의 및 논문지도 허용

2-7. 연구단장과 그룹리더는 동일 장소에서 근무해야 합니까?

A. 네. 연구단장과 그룹리더 등 연구 핵심인력은 동일장소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.

2-8. 연구단장과 그룹리더가 연구단에 참여하면서 다른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?

A.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. 다만 국제협력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2-9. 연구단장이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?

A. 연구단장은 IBS 연구에 전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따라서 IBS는 선정된 연구단장에게 기존 과제를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.

2-10. 연구단의 연구비는 어떻게 관리하나요?

A. 본원과 캠퍼스 연구단의 경우 IBS가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며, 외부 연구단의 경우 유치기관에서 연구비를 관리합니다.

2-11. 연구단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나요?

A. 연구단 성과평가는 3년 단위로 시행합니다. 신설 연구단의 경우, 연구단 구성 2년 후에 컨설팅 방식의 중간점검을 실시하고, 이후 3년 후부터 성과평가를 시행합니다.

2-12. 연구단은 운영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?

A. 연구단은 3년 단위의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.

2-13. 연구단 연구성과로 발생한 논문과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나요?

A. 논문과 지식재산권의 소유 원칙은 아래와 같으며 기관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.

<연구단 유형별 연구성과 분배원칙>

구분	논문	지식재산권
본원 연구단	IBS와 저자의 원소속기관 병행 명기*	IBS*
캠퍼스 연구단	IBS 및 저자의 원소속기관 병행명기	IBS 및 발명자의 원소속기관 공동소유
외부 연구단	IBS 및 연계기관** 병행명기	IBS 및 발명자의 원소속기관 공동소유***

* 대학 또는 출연(연)에서 본원 연구단장으로 파견 온 경우, 논문은 IBS와 원소속기관을 병행 명기하되, 지식재산권은 IBS가 소유

** 연계기관이란 캠퍼스 또는 외부연구단이 설치되거나, 그 소속 인력이 연구단에 파견·겸임 등을 통해 근무하는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말함

*** 연구단 유치기관 외의 기관에서 유치기관으로 파견된 연구원이 발명자인 경우, IBS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발명자의 원소속기관과 유치기관 간 협약에 따름

2-14. 연구단장이 정년,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연구단은 어떻게 되나요?

A. 연구단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연구단의 구성원이 연구를 일정기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, 연구공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.